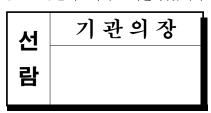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749호 2023. 6. 7.(수)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4호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72호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3-73호 오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7 남해군 고시 제2023-74호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12 남해군 고시 제2023-75호 상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14

#### 공 고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24호

###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6월 7일

###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를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는 숙직 근무자(재택 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군수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숙직"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및 당직"으로, "5일(휴일을 포함한다)"을 "10일(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휴무하게"를 "휴무하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72호

###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41-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8일

### 남 해 군 수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중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m)	비고
군도	7	소량교	상주면 양아리 762-4	상주면 양아리 641−2	_	76	금회 공사구역

※ 군도7호선(노선명: 두모~금양)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4.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1 참고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실음생략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결정(변경) 조서

□ 남해군관리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W		ਜ	모		,,	연장	3 3	·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등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면 상주리 2207	상주면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_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 7호선
변경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56	상주면 상주리 2207	상주면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_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2-67호선 소	소로2-67호선	○ 선형변경 - L = 6,274m → 6,256m	○ 상주면 양아리에 위치한 소량교 인근 군도7호선의 선형개량을 위하여 금회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 함

### 남해군계획시설(도로: 소로2-67호선)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4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소로2-67호선) 정비공사

- 명 칭: 군도7호선 선형개량공사(소량교)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금회 사업구간

 $B = 8.0 \text{m} \sim 10.0 \text{m}, L = 76 \text{m}, A = 1.498 \text{m}^2$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남해군수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1 참고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 별첨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한호	חא	시킨	시크	( m² )	(m,)	성명	주소	Ol T
	:	Я		16,703	1,498			
1	상주면 양아리	642	답	327	327	남해군		
2	상주면 양아리	641-3	답	474	474	남해군		
3	상주면 양아리	641-2	도로	56	56	박**	***	
4	상주면 양아리	1950	구거	8,639	167	농림축산식품부		
5	상주면 양아리	1954	도로	6,787	54	국토교통부		
6	상주면 양아리	743-3	답	20	20	김**	***	
7	상주면 양아리	763-1	답	48	48	김**	부산 영도구 ***	
8	상주면 양아리	762-3	전	4	4	박**		
9	상주면 양아리	743-2	도로	195	195	남해군		
10	상주면 양아리	762-4	도로	36	36	남해군		
11	상주면 양아리	744-2	도로	66	66	남해군		
12	상주면 양아리	761-3	도로	51	51	김**	***	

남해군 고시 제2023 - 73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내용

번호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8	지정사유	비고
신호	71178	TI 71	유형	등급	면적(㎡)		1177
1	오곡지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일원	침수위험	나	207,592	오곡지구 주변지역 침수위험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 3. 지역·지구 효력 등

가.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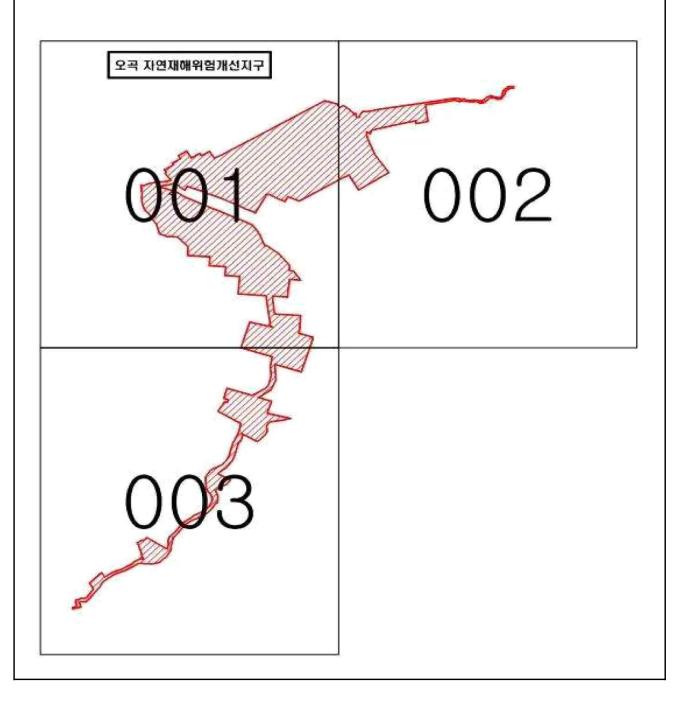
나.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일로부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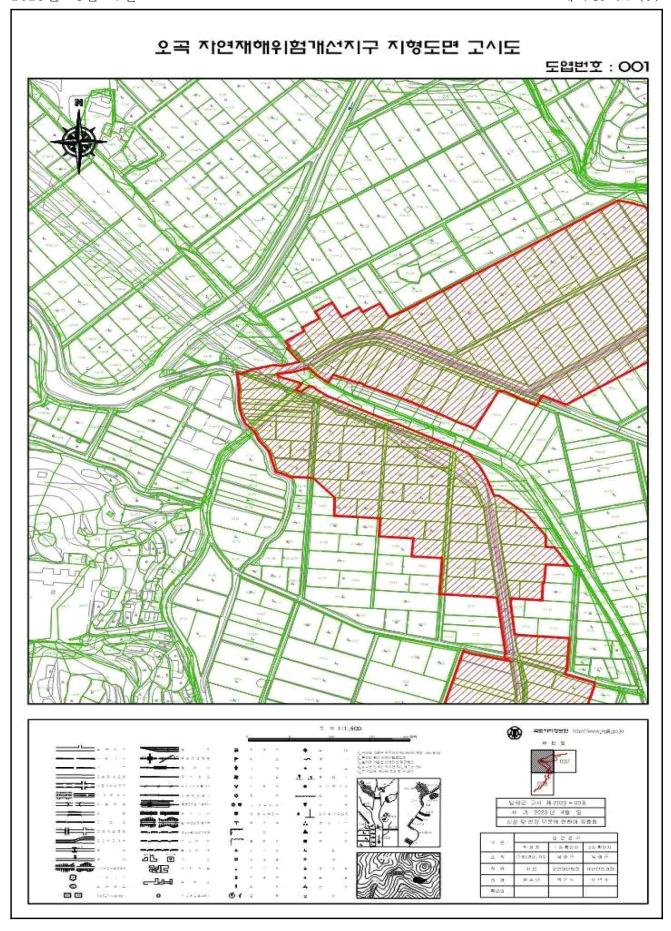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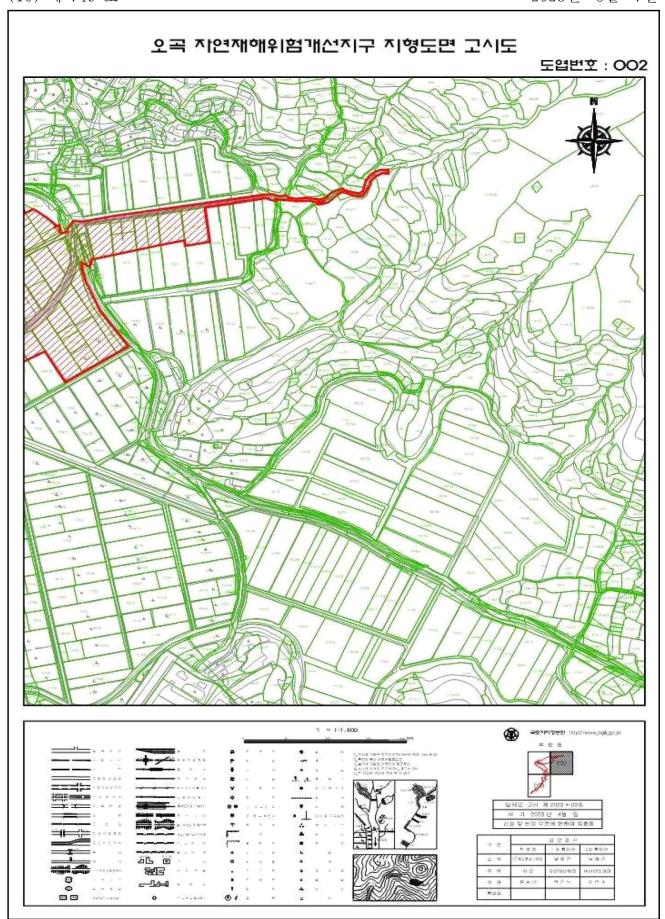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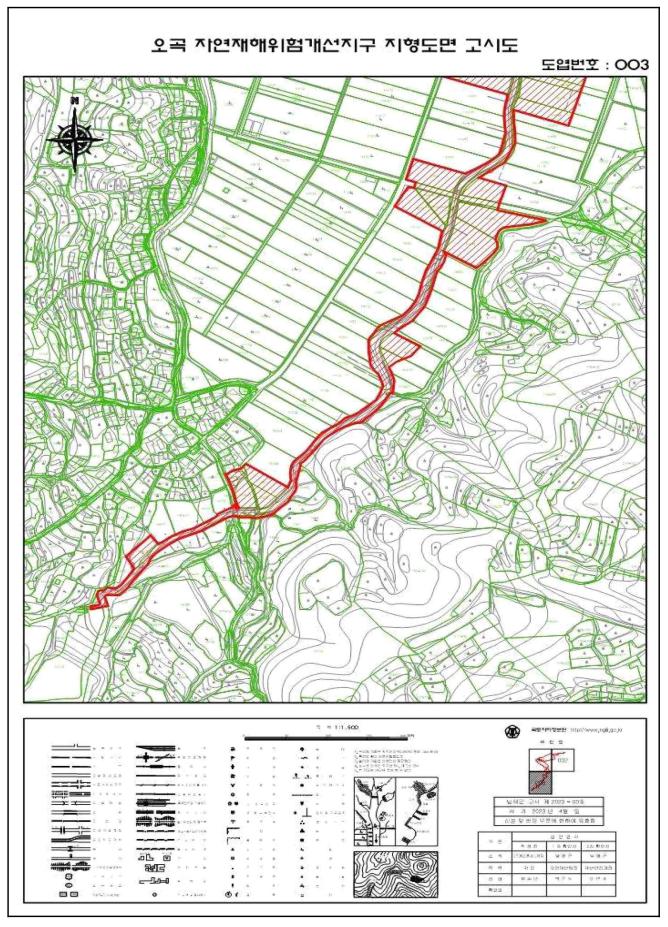
# 지형도면고시 일람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남해군 고시 제 2023 - 74호

##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 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일

##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 내용

_		0 11 0					
	지구명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비고
	ヘナな	71 71	유형	등급	면적(㎡)	시장사표	<b>п</b> ж
	두모 지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	해일 위험	나	59,684	대풍내습시 해일로 인하여 두모천(지방) 이 범람하고 월류가 발생하여 배후지 저 지대 침수 및 공공시 설물 파손	사이제제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 3. 지역·지구 효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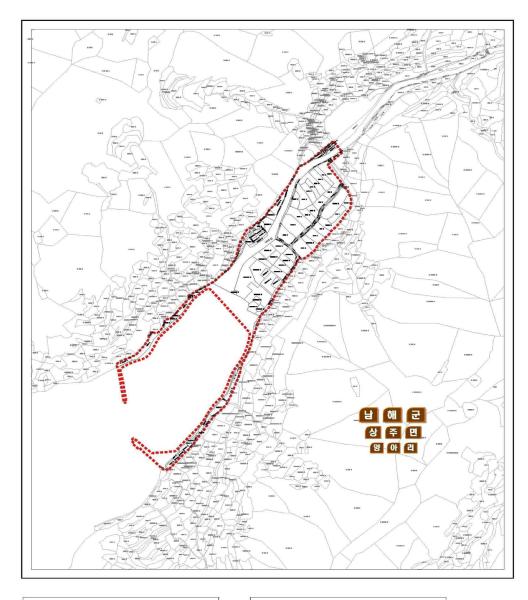
가.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나.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일로부터 발생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지형도면



■ 행정구역 : 남 해 군

■ 지정권자 : 남 해 군 수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남 해 군 수



■ 명 칭 : 두모지구
■ 유 형 : 해일위험지구
■ 등 급 : 나 등급
■ 면 적 : 59,684㎡



죽 척 1:1000

남해군 고시 제2023 - 75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 남 해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지정내용

번호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8	지정사유	비고
민오	7173	71 71	유형	등급	면적(m²)	7 78 71 π	비포
1	상신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40 일원	침수 위험	나	41,206	상신지구 주변지역 침수위험	

나. 지정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 2. 기 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 3. 지역·지구 효력 등

가.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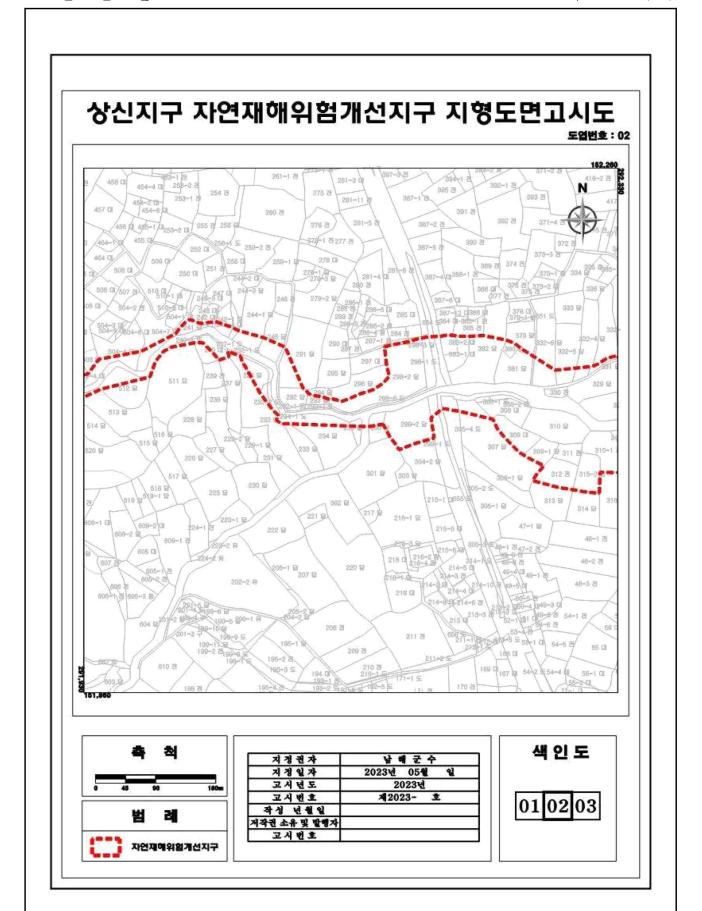
나.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일로부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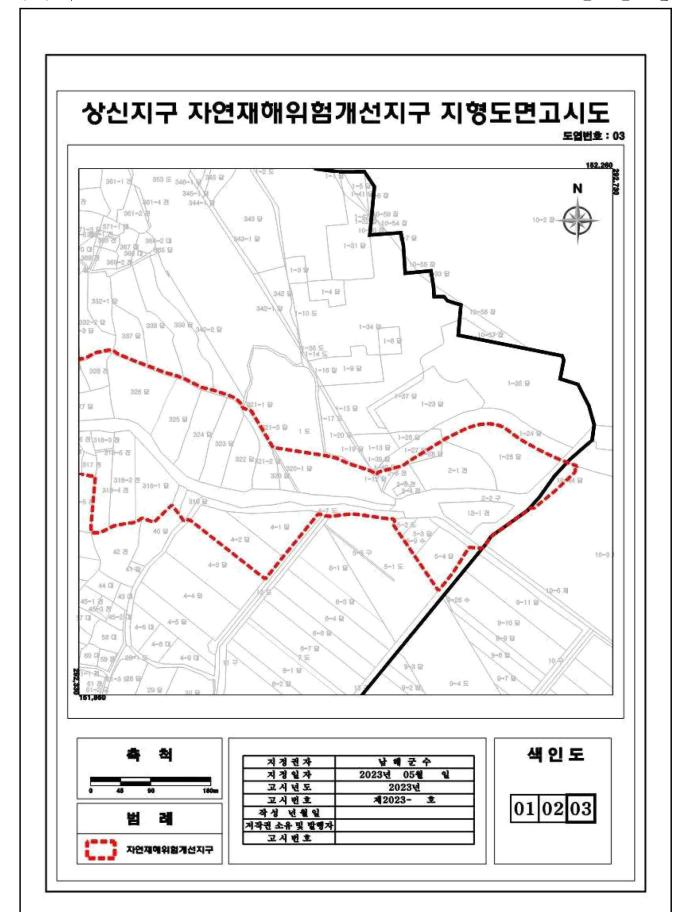
4. 열람장소 :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758호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국도 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국도 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남해군 서면 노구리 지내(국도77호선)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위험도로 개선공사
- 명 칭 : 국도 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다. 사업량 : 위험도로 개선공사 1식 L=0.75km(1지구 L=0.53km, 2지구 L=0.22km)
- 라. 사업시행자: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5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2022. 5. 22. ~ 6. 6. (15일간)
  -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759호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2호선 진주 내동 독산지 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명 : 국도2호선 진주 내동 독산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3. 열람기간 : 2023. 5. 22. ~ 2023. 6. 6.(15일간)

####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 055-740-2615
- 의견제출기간 : 2023. 5. 22. ~ 2023. 6. 6.(15일간)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37-6 등 5필지

- 토지소유자 : 김0옥(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12번길 28) 등 5명

- 관 계 인: 이O효(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40번길 30)

6.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남해군 공고 제2023-763호

##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남해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 5. 22.

###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목적 : 노인보호구역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3.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5. 22. ~ 2023. 6. 11. (20일간)

5.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붙임참조)

시 설 명	위 치	지정 구간	비고
북변1리경로당	남ill 북변 205-1 ~ 281-10	연장(L)=250m	
유림2리경로당	남해읍 북변2556-6 ~ 281-10	연장(L)=290m	
정거경로당	이동면 무림리1135-6 ~ 10220-1	연장(L)=300m	

#### 6.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남해군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나. 접 수 처 : 경상남도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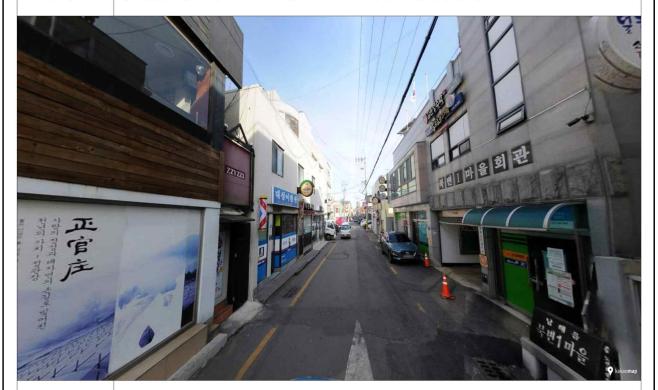
다. 보내실 곳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건설교통과)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남해읍 북변리 205-1일원(북변1리경로당(마을회관))



현장사진 남해읍 북변리 205-1일원(북변1리경로당(마을회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남해읍 북변리 604-1 일원(유림2리경로당(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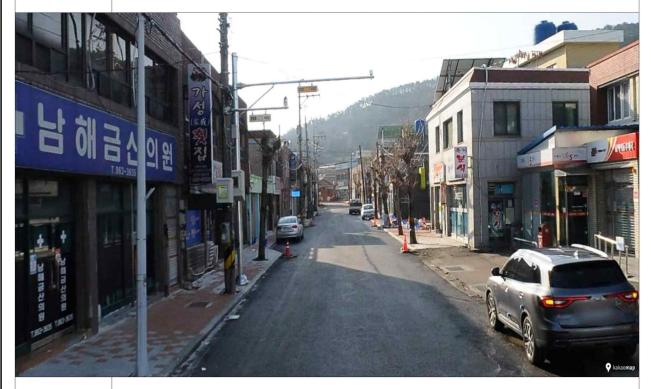


현장사진 남해읍 북변리 604-1 일원(유림2리경로당(마을회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이동면 무림리 1131-3 일원(정거경로당(마을회관))



현장사진 이동면 무림리 1131-3 일원(정거경로당(마을회관))

남해군 공고 제2023-772호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조례」
- 2.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현행조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건축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7조)
    - 1) 근 거 : 건축법시행령 개정「2020.04.21.(시행2020.10.22.)」
    - 2) 내 용 : 남해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개정
  - 나.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기준 정비(안 제48조)
    - 1) 근 거 : 중조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정비건의.
    - 2) 내 용 :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저장시설, 소각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9조)
    - 1) 근 거 : 건축법 개정 「2022.06.10.(시행2023.06.11.)」
    - 2) 내 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업무범위 마련
      - ※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 지역 의무 설치

-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안 제50조)
  - 1) 근 거 : 건축법 개정「2022.06.10.(시행2023.06.11.)」
  - 2) 내 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재원·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6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87, 팩스 055-860-3739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전화 055-860-3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영 제5조의5제6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기능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 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8조제2호 중 "유사한"을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각시설 :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로서 연돌을 제외한 시설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관리

-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진 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6.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7.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 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 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 4. 그 밖에 수입금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 2.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 · 점검 비용
  -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 · 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 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공작물축조신고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이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공작물축조신고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구조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23-783호

###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3조 ~ 제5조)
- 다.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남해군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

- 주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 전화 : 055)860-3812, 팩스 055)860-3882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전화 055-86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독사"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2. "고독사 위험자" 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사회적 고립가구" 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4. 청년층 · 중년층 ·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 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3.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 6.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지원
  -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810호

## 남해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

남해군 고시 제2021-9호(2021.01.1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의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문화공원: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 명칭 :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변경)
  - 면적 : 26,816 m² → 27,043 m² (증227 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 8. 열람장소 및 기간

-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기정>

CH PAI	소기	 대지	지	번	7) 17	면조	(m²)		소유자	소유권	외권리	มา
연번	읍·면	리ㆍ동	본번	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합	계			125,737	26,816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8,051	8,010	남해군				
2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3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4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5	창선면	상신리	1	5	답	2,017	1,506	남해군				
6	창선면	상신리	1	7	답	13,989	8,008	남해군				
7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8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9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0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1	창선면	상신리	1	14	도로	12	12	국토교통부				
12	창선면	상신리	1	15	답	108	108	남해군				
13	창선면	상신리	1	16	답	28	28	남해군				
14	창선면	상신리	1	17	도로	201	6	남해군				
15	창선면	상신리	1	19	답	36	36	남해군				
16	창선면	상신리	1	23	답	2,540	286	남해군				
17	창선면	상신리	1	29	답	14	13	남해군				
18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19	창선면	상신리	342	1	답	172	172	손*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08번길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진주시 도동천로			3/4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26번길			1/4
21	창선면	상신리	343	1	답	192	192	장*기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2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3	창선면	상신리	344	1	답	26	26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4	창선면	상신리	347	1	제방	332	85	국토교통부				
25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26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27	창선면	상죽리	10	2	잡종지	90,477	786	기획재정부				

### <변경>

اددام	소기	<b>패</b> 지	지	번	w) 177	면조	(m²)		소유자	소유권	!외권리	,,,,
연번	읍·면	리ㆍ동	본번	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합:	계			27,043	27,043					
1	창선면	상신리	1	1	답	36	36	남해군				1단기
2	창선면	상신리	1	30	답	8,015	8,015	남해군				1단기
3	창선면	상신리	1	2	도로	293	293	남해군				1단기
4	창선면	상신리	1	3	답	281	281	남해군				1단기
5	창선면	상신리	1	4	답	458	458	남해군				1단기
6	창선면	상신리	1	31	답	1,587	1,587	남해군				1단>
7	창선면	상신리	1	41	답	168	168	남해군				1단기
8	창선면	상신리	1	34	답	8,188	8,188	남해군				1단기
9	창선면	상신리	1	8	답	325	325	남해군				1단기
10	창선면	상신리	1	9	답	1,133	1,133	남해군				1단기
11	창선면	상신리	1	10	도로	76	76	남해군				1단기
12	창선면	상신리	1	13	답	580	580	남해군				1단기
13	창선면	상신리	1	37	답	286	286	남해군				1단기
14	창선면	상신리	1	38	답	13	13	남해군				1단기
15	창선면	상신리	1	32	잡종지	9	9	남해군				1단기
16	창선면	상신리	1	39	답	4	4	남해군				1단기
17	창선면	상신리	1	40	답	1	1	남해군				1단기
18	창선면	상신리	1	42	잡종지	2	2	남해군				1단기
19	창선면	상신리	342		답	617	617	손*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08번길 29-6, 203호			2단기
20	창선면	상신리	343		답	2,525	2,525	이*철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120, 101동 703호(상대동, 상대한보타운)			2단기
								이*자	진주시 신안들말길 26번길 5-5(신안동)			2단기
21	창선면	상신리	344		답	983	983	박*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개금동 455 신개금엘지아파트 203-1702			2단기
22	창선면	상신리	347	5	제방	81	81	국토교통부				1단기
23	창선면	상신리	347	2	잡종지	244	244	남해군				1단기
24	창선면	상신리	347	4	잡종지	27	27	남해군				1단기
25	창선면	상죽리	10	53	잡종지	233	233	기획재정부				1단기
26	창선면	상죽리	10	55	잡종지	74	74	기획재정부				1단기
27	창선면	상죽리	10	56	잡종지	376	376	기획재정부				1단기
28	창선면	상죽리	10	58	잡종지	329	329	기획재정부				1단기
29	창선면	상죽리	10	59	잡종지	1	1	기획재정부				1단기
30	창선면	상죽리	10	60	잡종지	98	98	기획재정부				1단기